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8월 10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10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8. 9.(월)	담당부서	전력계통혁신과
담당과장	정재환 과장(044-203-3930)	담 당 자	김휘강 서기관(044-203-3925)

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'주민지원사업' 비중확대 가능

▸ 현재 100분의 50으로 제한된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 개정

▸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유인 근거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취지 유지

- 「송전설비주변법」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문승욱)는 **8월 10일(화) 국무회의**를 통해 **"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**(약칭 : 송전설비주변법) **일부개정법률 공포(안)"을 의결**했다고 밝혔다.

○ 동 공포안은 **현재 100분의 50 범위 내**로 규정되어 있는 **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**을 주요 골자로 하며,

*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,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,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

- 지난 3월 **이철규 의원 등이 발의**한 이후, 6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**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**한 바 있다.

□ 그간 송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으로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도 있었으며 고령 등 사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, **일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의 비율 상향을 희망**해왔다.

○ 이러한 **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**하여 **대상주민 전체가 합의**하면 **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**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.

□ 이번 법률개정은 지원사업에 대한 **주민들의 만족도**를 높이는 것은 물론 **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**함으로써 **전력수급의 안정성에도 기여**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한편 마을공동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하여, 지원금 결정시 사업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**마을공동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**하였다.

○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**인센티브 제공여부와 세부내용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**될 예정이다.

□ 산업부 관계자는 “금번 송전설비주변법은 **이르면 10월 중 공포될 예정**으로 **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**된다”고 하면서,

○ “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 결정기준 등 **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**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○ 또한 “관계부처, 유관기관, 지자체 등 **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**를 통해 동 법률이 **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**하고 **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**하는 한편 **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모**할 수 있게 하겠다”고 언급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김휘강 서기관(☎ 044-203-39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